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823호 2023. 2. 23.(목)

## 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23-24호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인가 고시----- 1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23-302호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----- 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사 천 시 공 보

제823호

사천시 고시 제2023-24호

##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인가 고시

사천시 고시 제2019-289호(2019.12.26.)로 최초 시행계획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2-264호(2022.12.8.)로 최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어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23일

## 사 천 시 장

1. 사업의 명칭 :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
2. 사업의 목적 :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·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
3. 사업비 : 5,950백만원(국비 70%, 지방비 30%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23호

## 4. 주요사업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분야	세 부 사 업	사업비	비고
<b>합 계</b>		<b>5,950</b>	
기초생활기반확충	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 조성(657.4㎡)	3,918	
	경로당 리모델링(89㎡)	136	
	사계절 다목적구장 조성(273㎡)	98	
	<b>소 계</b>	<b>4,152</b>	
지역경관개선	수변산책로 정비(293㎡)	866	
	<b>소 계</b>	<b>866</b>	
지역역량강화	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	176	
	주민 복지 프로그램	104	
	마을경영 지원	92	
	<b>소 계</b>	<b>372</b>	
부대비용	기본 및 실시설계 등	560	

5. 사업시행자 : 사천시장(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일괄 위탁)

## 6.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

- 착 공 일 : 2020년 3월 4일
- 준 공 일 : 2021년 12월 17일

7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

8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재생과(☎055-831-3240),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(☎055-851-81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23호

## 사천시 공고 제2023-302호

「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3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
  - “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 ⇨ “업무담당 국장”으로 변경
  - “주소정보 업무담당 부서장, 도로·문화·관광 업무담당 부서장 위촉직 위원”  
⇨ “당연직”으로 변경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# 사 천 시 공 보

제823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토지관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[www.sacheon.go.kr](http://www.sacheon.go.kr))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 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토지관리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2820, FAX : 831-6098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23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23호

##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3 -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2. .

제 출 자: 토지관리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주소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로명주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나.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제4항 신설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# 사 천 시 공 보

제823호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도로명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공보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3. 2. . ~ 2023. 3. .(20일 이상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# 사 천 시 공 보

제823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주소정보 업무담당 부서장, 도로·문화·관광 업무담당 부서장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 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되, 위촉위원의 경우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.

가. 소방, 경찰,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

나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다. 시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
라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위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 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23호

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1. <u>소방, 경찰,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</u></p> <p>2. <u>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	<p>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 <u>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u>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: 주소정보 업무담당 부서장, 도로·문화·관광 업무 담당 부서장</u></p> <p>2. <u>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되, 위촉위원의 경우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가. <u>소방, 경찰,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</u></p> <p>나. <u>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다. <u>시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</u></p>

3. 시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) 공무원이 아닌  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 
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

<신 설>

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
라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사람

<삭 제>

<삭 제>

제7조(위원의 임기) -----  
위촉위원-----  
-----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 
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 
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을 대  
체할 수 있다.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도로명주소법

제29조(주소정보위원회)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, 시·군·자치구에 시·군·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, 시·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·군·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1항에 따른 시·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·군·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